
- 2019년 본청 재무감사(7월)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척시
[기획감사실]

2019년 본청 재무감사(7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12건	주의 6 시정 6		1,084,000		
1	◆◆◆◆◆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30,000		
2	◆◆◆◆◆	2016~ 2018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주의				
3	○○○○○	2016~ 2018	공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주의				
4	○○○○○	2018~ 2019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5	○○○○○	2017~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125,000		
6	○○○○○	2017~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220,000		
7	▲▲▲▲▲	2017~ 2018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8	▲▲▲▲▲	2017~ 2018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80,000		
9	●●●●●	2019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주의				
10	●●●●●	2017~ 201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11	●●●●●	2017~ 2019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시정	추징	590,000		
12	●●●●●	2018~ 2019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39,000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3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2건					미소화 30
****.**.**	제**회 ***** ***** 재료 구입	****	1,000	-	15	15
****.**.**	제**회 ***** ***** 재료 구입	***	1,000	-	15	1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제◀◀회 ♠♠♠ ♠♠♠♠♠♠ ♡♡♡♡♡♡ 재료 구입’ 등 2건을 집행하면서 재료비 예산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채권 매입의무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지역개발채권 30천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3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회계서류 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연 도	계	이면 승낙사항 미작성	서식 사용 부적정	검수조서 미작성
2016년~2018년	11건	5건	3건	3건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2. 내 용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 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구입과 지출결의서)]이나 [별지 제50호서식(공사·용역 지출결의서)]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지출결의서[별

지 제45호서식(일반)]를 사용하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에 따르면 예산집행은 금액 범위에 따라 부시장·국장·실·과장에게 집행 품의를 하여야 하며, 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인건비·여비·일상경비 교부의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 조건」 VIII.이행의 완료 및 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점검’ 등 3건 208천원을 지출하면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 ♣♣♣ ♣♣수리’ 등 3건 789천원을 지출하면서 물품의 검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 ◉◉◉ 행정봉투 제작’ 등 5건 8,395천원을 지출하면서 이면 승낙사항 및 지출결의서 작성내용을 미기재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등 회계 관련 절차에 맞게 집행하여 주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6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공용차량 운행관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용차량 운행관리 현황

차량번호	차종	차명	연식	차량 등록일자	용도	전산행정시스템(새울)	
						배차신청 여부	운행일지 작성여부
○**	지프형 및 다목적 승용차	&&EV (전기차)	2016	2016.05.03	**** **** ****	기록없음	기록없음
○**	소형 화물차	*** *** *	2019	2019.03.05	***** **** ***	기록없음	기록없음 1)

※ 차량운행일지(**○****) 수기대장 작성내역 별첨

2. 내 용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

1) 차량운행일지 수기대장 작성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신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또는 행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일 하루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여,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1.차량정수관리대장 2.차량배차신청(승인)서 3.차량유류수불대장 4.차량운행일지 5.차량정비대장 6.그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중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행정시스템에 따라 기록관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업무용 공용차량 2대를 운행하면서 차량구입일 이후 2019.7.11. 감사일 현재까지 전산행정시스템에 차량배차신청(승인) 및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 차량은 별도의 차량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으나 작성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등 공용차량 운행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공용차량 사용 시 전산행정시스템을 통해 차량배차신청 및 운행일지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용차량 운행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위원회 심사수당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지출일	집행내용	지출처	직위	지급금액	비고
계	2건				140,000	
1	****.**,**	***** ** **** **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시의회 의원	70,000	서면 심의
2	****.**,**	***** ** **** ** 심사위원회 심사수당	***	시의회 의원	70,000	서면 심의

2. 내 용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두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참석 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일반운영비 항목에 따르면, 위원회 심사수당은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하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지방의회의원 자격 참여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 ** **** **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계획²⁾을 수립하면서 위원회 구성(안)으로 시의원 1명을 포함하기로 내부결재를 받았고, 실제 의회에 추천 의뢰³⁾를 통해 추천을 받아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명백함에도 시의원에게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하여 관련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2018년도 ***** ** **** **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계획”(○○○○○-****, 2018.04.04.)
“2019년도 ***** ** **** ** 및 심사위원회 구성·심사계획”(○○○○○-****, 2019.02.19.)
3) “***** ** **** ***** **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의뢰”(○○○○○-****, 2018.3.20.)
“***** ** **** *****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의뢰”(○○○○○-****, 2019.2.13.)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125,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3건					미소화 125
****.**,**	**** ***** 안전장구 구입	**	2,525	30	35	5
****.**,**	***** 유지관리 용역	(주)****	4,650	-	115	115
****.**,**	*** ** 구입	****	3,000	40	45	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안전장구 구입’ 등 3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25천원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화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125,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220,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 도	건수	출장시간	출장지	공용차량	지급금액	초과지급금액
2017~2019년	22건	4시간 이상	관내	사용	440,000	220,000

※ 세부내역 붙임참조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는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공용차량을 운행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관내출장 명령 시 공용차량 여부를 사용으로 선택해서 출장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장비 감액 등 지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2건 440,000원의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했음에도 출장여비 지급 시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하여 출장비를 정당액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220,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고
계	4건		1,080,2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직원 격려 만찬	320,000	내부직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직원 노고 격려차 만찬	570,000	내부직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관계자 격려차 만찬	128,000	내부직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 ** 격려품 구입	62,200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

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직원 격려 만찬' 등 3건 1,018천원을 집행하면서 내부공무원인 직원 격려 목적으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시책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고, '▣▣▣▣▣ ▣ ☎☎ 격려품 구입' 1건 62천원을 집행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임에도 ●●● 目 행사에 자매 읍면동에 대한 격려품 지급 목적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8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2건		3,366			미소화 80
****.**.~ **.	***** 임차료(7월~12월)	**** ****	1,122	-	25	25
****.**.~ **.	2018년 ***** 임차료	**** ****	2,244	-	55	55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건 3,366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8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8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목】 강사수당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행사실비보상금 항목 강사수당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내용	성명	수당		여비			지출 과목	비고
			수당	원고료	식비	일비	교통비		
총계						160			
****.**,**	*** ** 교육 강사수당 지급	***	***	**	20	20	36	행사실비 보상금	
		***	***	**	20	20	36		
		***	***	**	20	20	69		
		***	***	**	20	20	36		
		***	***	**	20	20	58		
		***	***	**	20	20	47		
****.**,**	***** ** 축하공연 강사수당	***	***	-	20	20	36	행사실비 보상금	
		***	***	**	20	20	36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

실비보상금(301-09)은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 체육행사·문화제행사·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국가단위행사에 참석을 위한 여비, 산업시찰·견학·참여를 위한 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운영비(201-03)는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로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 제작비,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행사실비보상금(301-09) 항목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하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2018.3.30. 시행)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교육 강사수당 지급' 등 2건을 지급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행사개최에 따른 강사수당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교통비 지급 시 일비는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포함하여 지급하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교통비 지급 시 일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내역 : 12건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각종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공공운영비(201-02)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는 건물 및 공작물 등의 취득비,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공관 및 관사운영 물품취득비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사무관리비 항목에 따르면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검사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료,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건축 설비, 차량정비유지비 및 소모품비 등 차량선택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차량수리비 지출’ 등 12건 16,154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있는 커피·음료 등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였고, 내용년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워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여야 할 소형관리기, 옷장, 컨테이너 등을 사무관리비로 구입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차량수리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정 59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적 요	채 주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9건		31,687			미소화 590 초과소화 15
****.**,**	**** ** 램프교체 및 노출전선 보수	(주)*****	3,637	-	90	90
****.**,**	**** ** 관리대행용역(8월~12월)	(주)***	1,328	-	30	30
****.**,**	**** 표지석 구입	****(주)	4,800	-	70	70
****.**,**	** ** ** 따른 현지차량 임차료 지출	(합)** *****	2,984	-	70	70
****.**,**	** ** * 물품구입비 지출	*****	3,567	-	50	50
****.**,**	** ** ** 관리대행용역(2018년)	(주)***	4,620	-	115	115
****.**,**	**** ** 물품구입	*****	1,138	15	-	-15
****.**,**	** ** ** 관리대행용역(2019년)	(주)***	4,620	-	115	115
****.**,**	**** ** * 지붕설치 작업	** *****	4,993	70	120	50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9건 31,687천원을 집행하면서 일반운영비 비목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역개발채권 면제대상임에도 채권을 징구하는 등 지역개발채권 590천원을 미소화하고, 15천원을 초과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59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39,0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	***	****.**.** ~**.**	인천	140,200	120,200	20,000	국외여비 중복

나.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단위 : 원)

적 요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 일수	지급 일수	지급액	초과 수령액	비 고
***** 감독공무원 관내출장여비(12월)	***	****.**.** ~**.**	16일	17일	339,000	19,000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 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1건을 지급하면서 출장기간이 8일간으로 국외여비 산출내역에 일비가 7일 포함되어 있음에도 국내여비 일비를 2일로 계산하여 일비를 중복 지출하였으며, '■ ■ ■ ■ ■ 감독공무원 관내출장여비(12월)' 1건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는 출장일수가 16일임에도 17일로 착오 계산하여 출장여비를 정당액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39,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